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 4. 23.(화)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4년 4월 12일
- 회부일자: 2024년 4월 12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가 안전 처리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위원회 비상설화 정비
 - (제10조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안전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

5. 검토의견

1) 조례 개정 이유 검토

- 본 개정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설 운영하던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이위원회’라 한다)를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현 정부는 ‘정부 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2022년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3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자체 위원회 3,000개 정비를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안내하고,
-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운영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행정력과 예산집행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축소·통폐합, 비상설 운영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충청북도교육청의 위원회는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사례 저조로 회의실적이 부진하여 상설위원회로 구성·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현재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 체계를 변경하는 본 조례 개정은 행정업무 경감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판단됨.

2) 개정 주요 내용 검토

-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한 현 조례 규정을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변경하였음.
- 이는 위원회가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사례 저조로 인하여 최근 3년 이상 미 개최 되는 등 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설 운영하던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조문체계가 법체계에 부합하여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됨.